

Md.c.4

지방자치제 실시 1년, 장애인관련 조례의 내용과 발전방향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37-061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2-16 진일빌딩 2층

전화/(02)521-5263 전송/(02)584-7701

값 : 삼천원

지방자치제 실시 1년 장애인관련 조례의 내용과 발전방향
● 96 / 지방자치제 실시 1년 장애인관련 조례의 내용과 발전방향

일시 · 1996. 7. 3(수) 오후 2시 ~ 5시

장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방자치제 실시 1년, 장애인관련 조례의 내용과 발전방향

일시 · 1996. 7. 3(수) 오~2시~5시

장소 · 장애인권익증진법 강당

차례

기조발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
김정열(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소장) 9

토론발제
광주광역시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박기만(장애인단체연합회 전문위원) 25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제정과
제주형장애인복지시책개발연구사업으로 본 장애인복지정책방향에 대하여
고현수(한국지체장애인협회제주도지부 기획과장) 29

조례의 제정과정과 장애인의 역할
박시하(서울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의원) 39

부록 63
1) 장애인관련 조례(전국)
2) 제주형장애인복지시책

• **조별제** •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

김정열(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

김정열(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소장)

1.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지난 일년

지난 1991년 4월과 7월에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여 명실공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앙중심의 발전지향성에 의하여 지역발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취약점은 사회복지를 미처 고려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역정서를 형성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위임사항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앙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삶의 터전을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흔히 쓰는 지방자치시대라는 말은 지방화시대에 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방화시대를 본격적으로 지향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우리 장애인계는 궁정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에 의해서 중앙단위의 허상에 기초한 장애인복지제도가 지방화시대에는 구체적인 현장을 중심으로한 장애인복지정책이 세워지리라는 기대를 가졌다. 왜냐하면 지역단위의 행정에서는 지역주민 하나하나의 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정책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지방간의 장애인복지 불균형 현상과 공적부조와 장애인복지서비스 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됨으로써 재정구조가 취약한 지방정부에서는 복지서비스제공의 차

지역간 복지서비스 불균형 신하 예상

별을 만드는 형편에 놓이게 되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예는 서울 시의 경우 가구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전세자금지원, 공동생활가정운영, 단기보호사업실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타 운영에 실비를 들여 예산이 투여되는 반면 강원도는 이러한 사업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2. 지방자치실시 일년동안의 장애인복지

가. 장애인관련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지역에 있는 노예제적 불가능

조례제정권은 헌법으로부터 직접부여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또한 조례는 법률에 준하는 민주적인 법형식을 통해 만들어지므로 법률은 아니지만 법률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각 지역의 장애인관련 조례를 검토하는 것은 지역의 장애인복지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현실을 점검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일 수 있다.

장애인관련 법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내용(2장 복지시책의 강구, 3장 복지조치가 이에 해당함 : 8조 장애발생예방, 9조 의료·보호, 10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11조 보호자에 대한 배려, 12조 교육, 13조 직업지도, 14조 주택의 보금, 15조 문화환경의 정비, 16조 경제적부담의 경감, 제17조 법제상의 조치, 20조 재활상담 및 일소등의 조치, 24조 보장구업체의 육성, 25조 자금의 대여, 26조 생업지원, 30조 고용의촉진, 31조제작품의 구매, 32조 시설의 우선이용, 33조 편의시설, 34조 생계보조수당, 35조 수당 및 자작, 36조 재활의 연구, 38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이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은 3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의무, 3장 장애인고용촉진 내용이 조례의 내용이 될 수 있으며 특수교육진흥법상의 3조·9조의 내용도 조례제정의 범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법적 제재조치를 할 수 없고, 실질적인 복지시책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얼만큼 각 자치단체가 책임있게 장애인 복지제도를 만들고 시행할 것인지, 확신을 가질 수 없고, 복지조치의 내용중에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과 총체적인 삶을 보장하는 시책이 없는 법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조례제정의 범위와 실효성에 많은 의심이 간다. 실제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생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사항에 집중되어 만들어져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훈련

받아야 하는 보호작업장이 개념없이 조례로 만들어진 것은 기존의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를 그대로 안은채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외는 복지관운영에 관한 조례들이 대부분이다(표1 참조).

그리고 조례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으나, 장애인복지관련 최초 조례라고 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의 공공 시설내의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조례상에 명기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건물 등의 구내 매점과 자판기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운영 소관이 직원 상조회로 되어 있어 끼여들 여지가 없는 것은 물론 장애인우선권 부여라는 명문화된 조례의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심 쓰듯 베풀어주는 자리가 대부분이 자판기 설치로는 부적합한 곳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판기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료 부과 부분을 살펴보면 상조회도 무료인 자판기 사용 전기료를 일반인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과하는 설정이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92년에 발표되었음에도 20여대만을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가능한 장소, 설치할 물건의 종류를 조사한 실적은 94년에 매점7건, 자판기 7건이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린 실적은 매점3건, 자동판매기 3건이며 조례가 만들어진 95년에는 매점5건, 자동판매기 6건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청의 총설치대수는 45개인데 반해 허가건수는 3건으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생업지원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제도는 도입되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가치가 지방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가 만들어졌다해도 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적인 세부사항을 성문화한 것이 조례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보행조례제정운동이나, 학교급식 관련 조례제정운동을 통한 시민운동의 활성화는 그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의원에 한하고 일반주민은 조례제정권한이 없는 관계로 현재는 여론화작업, 각종 민원 접수형식밖에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자치법의 개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그러므로 선거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방민주주의의 정착이 우리 장애인계에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될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천을 위한 방안모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겠다.

[표1] 장애인관련 조례 현황과 내용

구분	조례	개
재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1995.10.20) ○ 제주도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1995.) ○ 경산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1995.4.28) 	3
생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1995.4.25)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1995.6.5) ○ 남원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1995.1.12) ○ 경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1995.4.28) ○ 경기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1995.4.14) ○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1992.8.20) ○ 영주시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1995.1.9) 	7
고용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척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1995.1.7) ○ 태백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1994.1.6) ○ 구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조례(1991.1.6) ○ 광명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1990.12.10) ○ 동해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1995.11.20) ○ 경기도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94.3.10) 	6
복지 관설 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관설치 운영조례(1990.10.25) ○ 안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1994.11.23) ○ 성남시 장애인재활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1995.4.17) ○ 부산직할시 맹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1992.11.2) ○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1993.1.1) ○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1989.4.17) ○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1990.11.19) ○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1990.7.13) ○ 대구직할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조례(1991.2.1) ○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1991.4.4) ○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1992.6.26) ○ 대전광역시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조례(1995.9.15) ○ 수원시 재활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1995.1.9) ○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1991.2.12) ○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1988.9.13) 	15

	<* 서비스대상에 명시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1995.1.7) ○ 대구직할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1994) ○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1995.1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춘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1995.2.6) ○ 속초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1993.3.30)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립사회복지관 운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1995.11.1) ○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금설치 조례(1995.1.7) ○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94.4.6) ○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1995.3.8)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1995.12.1)
위원회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설치 조례(1993.5.11)
	1

나. <김영삼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기본방향은 “복지공동체”的 형성을 기저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재정부담의 최소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료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에의 참여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경쟁력강화라는 국가 경영의 목적에 밀려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적인 투자에 대한 획기적인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주도로 장애인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장애인편의시설의 공공기관 조기설치 및 전용주차구역질서확립, 캠프장소 마련, 장애인동승자에 대한 지하철 요금면제 등의 선언적인 시책이나 장애인먼저운동과 같은 분위기조성사업이 만들어져 있는 것과는 달리 실질적인 제도개선이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재정적인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없다.

[표2] 장애인복지예산 연도별 비율

단위 : 십억원

년도	국가예산(A)	장애인복지예산(B)	비율A/B
90	27,436	31	0.11
91	31,283	35	0.11
92	33,362	40	0.12
93	38,050	46	0.12
94	43,250	55	0.13
95	49,988	64	0.13

95년 국정감사 자료

3.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원칙

가. 사무배분의 원칙

- 공적부조의 재정책임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지역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중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수당액수는 4만원으로, 중앙에서 2만8천원을 지방자치체에서 1만2천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반하여 경기도인 경우는 별도로 도비를 들여 7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산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선정하고 급여관리 등의 책임만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인복지사업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다만 중앙정부는 장려적인 의미에서 국고보조를 통해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선은 자칫 지역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현재의 지방정부의 재정책임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가 주도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수요와 재정능력에 따른 국고보조의 차등지급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 복지재정의 불균형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도가 낮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책임차가 크며, 세출에 있어서의 복지기능이 매우 낮은 형편이다. 지난 94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자치단체별 재정책임도는 전국평균이 63.9%를 기록한 가운데 시·도는 69.9%, 일반시 63.6%, 군 24.5%, 자치구 53.2%로 농촌지역인 군의 자립도가 가장 낮았다. 특히 시도의 경우 최고 98.6%(서울), 최저 25.7%(전남)로 70%포인트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으며 전북의 군평균은 14.7%, 전남의 군평균은 14.4% 그리고 경기도의 군평균은 41.9%이다. 또 시·군·구의 경우 최고가 93.3%(경남 울산), 최저가 9.7%(전남 신안)로 더욱 심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3] 재정책임도 (94년 국정감사 결과)

지역	재정책임도
특별시 및 직할시	서울 98.6
	인천 93.2
	대구 88.9
	부산 85.2
	대전 81.4
	광주 65.2
도	경기도 76.7
	경남 52.9
	제주 46.2
	충북 40.9
	경북 36.2
	강원 35.5
	충남 33.3
	전북 36.2
	전남 25.7

- 공적부조사업의 공적부조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표4 관련) 그래서 중앙정부는 앞으로 지방정부에 재정책임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중앙정부 지원 위주의 원칙은 언제나 깨질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공적부조의 재정책임은 명백히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수행되는 국가사무의 원칙이 규정 되어야 한다.

[표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관련)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전염병 및 기타질병의 예방과 방역/묘지 화장장 및 낭골당의 운영 및 관리/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중 일부내용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1)주민복지증진 및 주민보건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및 지원 2)시·군·자치구에 공통되는 복지업무의 연계·조정·지도 및 조언	1)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시·군·자치구 단위 주민복지시설의 운영·지원 3)주민복지상담 4)환경위생증진등 주민보건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1)사회복지시설의 수요판단과 지역별 비치등 기본계획의 수립 2)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3)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동 및 지원 4)사회복지시설 수혜자로부터의 비용수납 및 승인	1)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사회복지시설 수혜자로부터의 비용수납 3)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 및 지도 4)사회복지법인등의 시설 설치허가 및 동 시설의 운영지도
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1)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2)시·군·자치구에 대한 생활보호보조금 교부 3)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4)의료보호 진료지구의 설정 5)의료보호시설의 지정 6)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용	1)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선정 2)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 3)생활보호의 실시(생업자금대여, 직업훈련, 취로사업, 수업료지급, 장제보호비 지급등) 4)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5)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보호비용 징수 6)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7)의료보호대상자관리 및 의료보호의 실시(진료증발급등) 8)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용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1)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조정 2)경로사업의 실시·지원 3)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4)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수립조정 5)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6)아동전용시설의 운영 7)아동보호조치 8)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9)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10)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조정 11)장애인의 검진·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12)장애인의 고용촉진 13)장애인의 편의시설의 설치지도·권고 14)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15)청소년건전육성계획수립조정 16)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17)불우청소년 보호지원 18)부녀복지종합계획수립조정	1)노인복지사업계획수립시행 2)노인복지사업의 시행 3)경로행사등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4)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5)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6)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7)아동전용시설의운용 8)아동보호조치 9)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10)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11)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인 지정 12)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13)장애인의 파악, 관리 14)장애인의 검진, 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15)장애인의 고용촉진 16)장애인의 편의시설의 설치지도 17)장애인복지시설운영, 지원 18)청소년선도대책수립,추진
---------------------------------	---	--

-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체로 80%내지 50%를 부담하고 있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일수록 욕구는 많으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력이 부족으로 서비스가 부족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 전달체계의 개편원칙

복지전달체계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사회보험인 경우에 대체적으로 준정부기관이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나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전문적인 전달체계가 지방정부의 단위에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해 전문적이고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관악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기도 안산시, 강원도 홍천군,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97년 6월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있으나 기존의 복지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역할과 맞물려 연계기능과 서비스가 내실 있게 제공될지는 평가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 복지업무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전달체계마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동사무소 업무는 복지사목으로

4. 현재의 지방자치제하의 제한적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

가. 장애인복지 예산의 증액

예산과정은 기본적으로 정치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예산은 생물과 같은 것이어서 논리적으로 해결되기만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고 정부예산은 복지부예산을 기본으로 하면 정부예산의 0.1%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앙정부 부처 분리정책을 고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에 쓰이는 예산 구조를 보면 거의 70%가까이 수용시설 등에 쓰여지고 있어 예산구조상에서 부산 비율이 더욱 낮다. 여기에다 중앙정부보다도 훨씬 수용시설 운영 등에 예산구조가 몰려있어 지역에서 조차 장애인에 대한 정책기조가 분리수용정책으로 일관되어 있다.(예 : 강원도)

[표4] 강원도의 '96 장애인복지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계		3,793,546	2,322,597	1,408,074	45,360	17,515
장애인의료비	1,070명	24,686	0.65(%)	19,749	4,937	-
장애인자녀교육비	164명	69,435	1.83(%)	55,548	13,887	-
장애인보장구	109건	21,800	0.57(%)	17,440	-	4,360
장애인등록진단비	18시군	8,600	0.22(%)	8,600	-	-
부랑인시설운영비	4개소	420,368	11.08(%)	336,294	84,074	-
부랑인자활사업비	130명	37,580	0.99(%)	30,064	7,516	-
부랑인시설기능보강	1개소	226,512	5.97(%)	113,256	113,256	-
부랑인시설장비보간	2개소	60,000	1.58(%)	30,000	-	30,000
장애인복지관운영	2	415,162	10.94(%)	166,064	249,098	-
봉사센타운영	1	43,109	1.13(%)	30,176	12,933	-
복지관담당설치	1	29,640	0.78(%)	-	29,640	-
복지관특수차량	1대	73,700	1.94(%)	36,850	36,850	-
보호작업장운영	1개소	4,200	0.11(%)	3,360	840	-
장애인수용이용시설운영	12개소	1,109,927	29.25(%)	881,250	228,677	-
장애인작업장신축	1개소	308,880	8.14(%)	154,440	154,440	-
정신질환시설운영	1개소	157,147	4.61(%)	126,106	31,526	-
생계보조수당	920명	441,600	11.64(%)	302,400	139,200	-
장애인단체지원	5개소	10,000	0.26(%)	-	10,000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개소	22,000	0.57(%)	-	22,000	-
전국농아인축구대회	1개소	4,200	0.11(%)	-	40200	-
보호작업장후생시설	2개소	22,000	0.57(%)	11,000	-	11,000
장애인시설기능보강	4개소	265,000	6.98(%)	-	265,000	-

지방자치체에서 복지예산증액을 위해 우리 장애인계도 타복지부문과 함께 시민사회단

체와의 연대를 통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통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 지방간의 재정격차 완화

- 재정적으로 취약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형식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화를 통해서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단기적으로 장애인복지예산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금도 경우에 따라서 50:50, 80:20이라는 보조금 배율비율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른 보다 세분화된 보조금 비율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다. '동'단위를 복지사무소로 전환함으로 공공부문의 복지 전달체계 확립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사무소의 운영을 진지하게 평가해서 복지전달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만일 복지사무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찾지 못했다면 지금의 시군구와 광역행정 그리고 동단위와의 기능조정을 통해 동단위를 복지사무소기능으로의 전환 모색을 통해 실질적인 전달체계확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겠으나 국민적인 합의를 이룸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리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라. 제도개선을 통한 운영의 묘 발휘

- 민간부문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 증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공무원의 전문직화 필요성,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문제, 위탁 운영의 경우 인사권에 개입함으로 금품수수의 사례가 발생되는 문제 등이 없어져야 한다.

5.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

지방화시대란 지방정치가 민주화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시대를 말한다. 주민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조건이며 주민의 참여문제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전전하게 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지역주민의 지역이기주의와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복지를 소비적인 관점으로 몰아가는 왜곡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중앙 정부는 민간참여의 강조를 통해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국가책임의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복지에 대한 책임의 확대가 지방화 시대를 여는 등 여는 선결 조건임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지역단위로 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장애인의 통합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통합의 기본조건의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필요한 조치란 편의시설 등이 마련된 사회환경조성,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의 활동범위 확대 그리고 지역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박기만(광주장애인단체연합회 전문위원)

광주광역시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박기만(장애인단체연합회 전문위원)

1. 조례의 현황

광주직할시 조례 제 4 호 별지 조례안 참조

2. 공공시설내의 자판기 설치에 관한 문제점

1)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조직인 상조회의 운영을 목적으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자판기를 동 시설내에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고, 조례 또한 법적 강제력이 없는 관계로 장애인 운영자판기 설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광주광역시 빛고을 정책조정실에서 추진중에 있는 유개승강장에 대한 자판기 설치와 관련하여 발표 당시 165개소라는 달리 현행 도로 운용관리상 관리권이 기초 자치단체장에 국한되어 있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광역자치단체장의 복지정책 시행에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음.

3) 따라서 이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① 정부차원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아울러 관행처럼 되어있는 공직자들의 상조회 수익성 사업을 전면 금지토록 하여야 하고

②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원활한 협조체제로 장애인 복지 재활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견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③ 또한 현재 공직사회의 지휘체계가 책임한계성이 인·허가 주무부서의 계장으로 한 정되어 있어 주무계장의 판단에 의거 결정되는 사항으로 되어있어 장애인계의 인식도가 부족한 주무부서의 계장의 인증에 의한 인·허가 절차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조례의 제정과정과 장애인의 역할

•토론발제 2•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 운용조례제정과
제주형장애인복지시책개발연구사업으로 본 장애인복지정책방향에 대하여

고현수(한국지체장애인협회제주도지부 기획과장)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제정과 제주형장애인복지시책개발연구사업으로 본 장애인복지정책방향에 대하여

고현수(한국지체장애인협회제주도지부 기획과장)

1 제주지역 일반현황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토속적인 문화와 관습이 상대적으로 현존하고 섬자체가 한시간 생활권으로 공동체의식이 강한 반면 고려시대 몽고의 침입과 삼별초로 인한 수난, 특히 1940년대 이데올로기 격전수난사였던 4.3사건과 6.25동란피난처로서 외지인에 의한 수난과 70년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관광개발 등의 부작용은 공동의 문화권에 부정적인 영향과 외지인에 대한 배타감으로 일정정도 나타나며 경제적으로는 관광 산업과 농업이 연계된 1차, 3차산업중심지역이고 사회, 문화적으로는 옛 탐라국이라 불렸듯이 토속신앙과 불교의 결합, 중앙과는 다분히 단절을 갖는 고유의 문화적 관습을 지닌 섬이다.

제주지역장애인은 95년12월 현재 약 5,000여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추산인구는 12,000여명으로 전체도민인구 50만 명의 2.4%로 추정된다.

도내에는 행정지원을 받는 관련 시설, 기관은 이용시설 2곳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회관, 재활의원), 수용시설1곳(아가의 집), 교육기관 2곳(영지학교, 영송학교), 장애인4단체(한국농아복지회제주지부, 한국맹인복지연합회제주지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제주지부,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제주지회)등이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용시설 및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특수교육학원등이 있다.

제주지역 장애인복지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제주지역 역사와 앞으로의 관광개발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앞으로 중앙정부의 독점적 권리가 배제되는 지방시대가 가속화되면 장애인복지양상과 편차가 심화될 것이라 본다.

2. 제주지역의 장애인복지제도(90년대 조례와 시책을 중심으로)

제주지역에서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최초의 활자화된 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내의 장애인복지관련계획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90년대 초반 제주도민의 초미의 관심사로 끝없는 찬·반양론과 이를 반대하는 한 젊은이의 목숨까지 앗아갔으며 제주도민의 특구지정을 반대한다는 경기도 모지역의 질투까지 받았던 거대한 project로 94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통과되었고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동년 제정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오는 2001년까지 총 7조3천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3차관광서비스산업과 1차농, 수산물산업의 적극 연계, 중산간지역의 개발허용, 무공해의 21세기형 전략산업 유치지원, 금융산업 및 회의산업지원, 개발로 인한 환경의 적절한 보호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을 사회복지발전에 균형있게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내의 사회복지계획중 장애인복지추진방향을 보면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촉진, 영세장애인의 최저소득보장, 특수학교 및 조기교육기관 확대, 의료서비스 확대, 장애인편의시설확충과 주거환경 및 문화환경개선, 장애인기관과 장애인단체를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제주도의 장애인복지환경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특성이 무시된 채 원론적인 수준이어서 일반화되고 개념화된 계획으로 보기에는 무리수가 따르고 현실적인 장애인복지계획은 96년 발표된 '제주형장애인복지시책(사회복지시책)'에서 좀 더 발전된 정책개념으로 틀이 잡히게 된다.

이와는 별개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장애인복지에 보다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계획의 실질 지원을 위해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장애인복지조례)를 제정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것이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를 개발하고자하는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채권발행이익금의 10%를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조례의 법적 밑바탕이 되었고 장애인복지조례는 95년 도지사발의와 도의회승인이라는 형식으로 제정되어진다.

장애인복지조례는 개발채권이익금뿐만 아니라 제주도일반회계에서도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육성, 자활작업장 육성, 재활시설 건립, 교육, 취미, 체육생활육성을 위해 2001년까지 47억원이상의 재원을 확보, 지원하도록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조례는 '96년 제주도예산중 일반회계에서 1억3천만원을 기금을 우선 조성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등 실질의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95년 제주에는 위의 두가지 흐름과는 별개로 새로운 장애인복지정책변화를 시도하는 '제주형장애인복지시책(사회복지시책)'연구사업이 관주도로 시작된다.

제주도는 제주 옛 고유의 수눌음, 짜냥, 삼무등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이를 사회복지정책에 접목시켜 정책에 추진, 반영시킬 목적으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용역을 하였고 장애인복지시책은 도내 특성상 연세대학교에 재용역, 96년 5월 최종보고서가 마무리됨으로써 내년 현실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제주형장애인복지시책에서는 실질의 공적부조 확대, 그룹홈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강화, 성인장애인과 정신지체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체육, 직업 및 보도, 문화, 레져프로그램등 2차 재활서비스를 강화하는 장애인전용복지타운 건설과 조사, 연구권과 민원, 통역, 심부름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단체에 위임시켜 장애인단체의 위상을 보다 격상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5년까지 1,000억원을 장애인복지에 투자하며 재원확보를 위해 개발채권이익금활용, 먹는샘물판매, 관광복권판매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사업이익금과 도내세, 관광세등 지방세를 신설하여 재원을 확보하는등 현실가능한 부분과 지방세 성격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켜 이를 확보하도록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과의 협의와 승인절차등이 필요하며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세입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으로 현실상 불가능한 요소도 존재하고 있다.

제주형장애인복지정책은 제주종합개발계획내의 장애인복지계획과는 달리 지역환경에 대한 고찰과 연구가 베어 있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이며 이 계획은 지방시대의 새로운 사회복지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는 별도로 94년 말 제주에는 전국에서 4번째로 '제주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

되었고 장애인복지위원회는 96년 6월 현재까지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필요한 의견과 정책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창구로서 일정정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주도내 장애인단체대표 4인(한국장애인복지연합회제주도지부, 한국농어복지회제주도지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제주도지부, 한국정신지체장애인협회제주도지부), 이용시설 1인(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회관장), 사회복지관련기관장 2인(제주도사회복지회), 중등교육관련 1인등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지협의회, 한국복지재단제주도지부) 장애인을 회원으로 갖고 있는 장애인단체의 구성원비율이 높은 편이다.

3. 제도개발과 제정과정에서의 정책참여(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94년 제주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95년 장애인복지조례제정, 96년 제주형장애인복지시책개발 등 3단계 과정에서 지역장애인단체의 정책제안과 정치세력화(압력단체화)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정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지 반추 해볼만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강제장치들이 실천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하는데로만 될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열악한 재정과 복지부동의 행정기관 실무등 외적 요인과 장애인단체와 이용시설간의 눈에 보이는 갭, 극복해야 할 장애영역간의 신뢰부분은 상호모순을 가지며 진로를 가로막는 걸림돌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를 인정하며 여기서는 제도 및 정책참여의 과정을 우리단체입장에서 정리하는 것이니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음으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우리단체는 1984년 창립이후 꾸준히 조직강화사업을 벌여 96년 6월 현재 4개시·군지회와 17개읍·면·동분회에 회원 1,200여명을 거느린 도내 어떠한 시민단체보다 수의 우위를 점한 대중조직을 건설하였다.

도내 추산지체장애인 6,000여명의 20%, 등록지체장애인 3,000여명 중 40%가 가입되어 있어 정책반영의 명분을 축적하였고 시각·청각·언어, 지체, 정신지체인의 대리인등 장애 영역별 단체의 협의체인 제주장애인4단체협의회를 결성, 정책제안은 공동의 제안을 원칙으로하여 장애인4단체협의회를 공식채널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93년 제주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촉구, 94년 장애인복지기금운용조례수정촉구, 95년-96년 장애인복지시책개발을 위한 이 익섭교수 초청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노력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과정에서의 참여과정이다

우리는 제주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에 도내 장애대중들에게서 인정받고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할수 있는 장애인 4단체가 필히 구성원으로 참여하여야 함을 촉구하였다.

당초 도에서는 장애인단체의 대표자 1인만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내정하고자하였고 도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었다.

장애인 이용시설과 교육기관, 수용시설의 서비스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자칫 재가장애인 중심이 아닌 수용시설로의 획일적 프로그램은 지양되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재가장애인의 기본욕구를 가장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집단은 장애인단체이며 향후 균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위해 심의기관인 위원회에 장애인4단체의 참여는 당연함을 요구, 결국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었다.

둘째, 장애인복지조례제정과정에의 참여이다.

장애인복지조례제정이전 이 조례의 초안은 가칭 '장애인 및 아동복지기금설치조례'로 도실무진에서 작성하였다.

우리는 도백의 의지가 실무차원에서 혼선을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장애인계층만을 한정짓도록 건의하였다.

또한 기금의 용도중 장애인단체의 지원에 있어 불명확성을 지적하고 조례로 인해 일부 제주도에 유입되어 있는 사이비성단체의 난립을 되려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에 장애인단체명의를 기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처음의 아동복지까지 포함되었던 조례는 발의과정에서 장애인복지조례로 개칭되고 장애인단체의 명의명기는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의 수정발의절차를 거쳐 통과되었다.

셋째, 제주형장애인복지시책연구과정에서의 참여이다.

우리는 장애인복지시책연구책임자인 연세대학교 이 익섭교수를 초청, 간담회와 오찬을 개최한 자리에서 제주도장애인복지환경을 소개하고 재가장애인중심의 장애인복지, 성인장

애인 및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본질적 재활와 보호를 1차시하며 보건복지부의 획일적 프로그램의 답습은 지양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장애인단체의 본질적 기능인 정책제안능력을 배양하고 장애인복지의 보조동력이 아닌 주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위해 행정기관은 당연히 장애인단체에게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함을 제안하였다.

시책에서는 도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체육관의 건립을 제안하고 있는 바 우리는 성인장애인과 정신지체장애인의 2차재활프로그램이 강조되는 체육, 레저, 문화, 직업교육 및 정보센터의 기능을 살린 '장애인전용복지타운'으로 개념변화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협의회는 도백을 면담하여 전용복지타운건립의 필요성과 현실성을 인정받고 공식적인 도사업으로 실행할 것을 약속 받았고 내년 착공가능성이 높게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되면 미취학아동과 청소년중심의 직업, 치료, 의료 등을 행하는 복지회관과 성인을 중심으로 2차재활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장애인단체주체의 복지회관으로 차별화되어짐은 물론이다.

4. 장애인단체의 정치세력화

흔히들 장애인단체는 모래알조직으로 인식한다.

일부 식자층은 장애인단체를 프로그램전달에 있어 비전문집단으로 보거나 기껏 보조의 위치로보는 경우도 있으며 장애인단체를 빙자한 장사속 사이비단체로 인해 장애인단체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요인을 제공하는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인단체의 압력행사에 대해서는 이들은 함구를 한다.

〈일부 이용시설과 장애인을 위한다는 장애인지원단체에서는 정부의 방침이나 사업이 장애인의 입장과 배치되는 민감한 내용이면 뒤로 빠지는 것이 예사이다.〉

장애인단체는 정책 비판을 예사롭게 하며 비판과 제안이 생명이다.

장애인단체는 못배운 사람, 잘배운 사람, 못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모두가 회원이다.

일상적으로 그들을 만나기에 정서를 안다.

장애인단체의 존재이유는 거기에서 출발한다.

제주지역장애인복지제도 3단계 발전 과정은 다행히 장애인복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단체장과 일부 입법의원에 힘입음이 크다.

하지만 장애인단체의 로비와 건의, 때로는 장애인의 이름으로 때로는 단체의 이름으로 행한 압력행위는 민선지방시대의 위정자들에게 장애인도 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본인의 홍보에도 훌륭한 도구가 된다.

우리는 이를 두려워 하지 않았다

우리단체는 넥타이부대도 아니고 농산물수입을 반대하는 애처로운 농민도 아니지만 풍칠수는 있음을 보여 주어야 했기에 작년 지방선거에 줄기차게 회원들을 이, 삼십명씩, 많게는 일, 이백명씩 유세장으로 함께 다녔다.

설령 장식용이라도 좋으니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자 무던히 애를 썼다

결국 우리의 모험은 성공했고 눈으로 성원했던 모든 이가 당선하는 행운을 누렸다.

혹자들은 우리의 행동을 못마땅해 한다.

순수한 사회복지판에 정치색깔이 웬 거냐고.

사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행동이 올바르다고 강변하고 싶지않으며 장애대중의 의사에 반할수 있는 오류가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현재의 한국상황과 제주지역상황에서는 정치적 항변의 방법을 여러 갈래에서 찾아내기에는 선택의 폭이 너무 좁은 것이 사실이며 우리는 장애인의 표를 의식하도록 하는 1차적 목표를 달성한 후 순조로운 정책제안 수순을 밟는 방법을 결과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란 누구누구의 당선으로 보장되어지는 모험이 아니라 꾸준한 정책에 대한 연구,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에 대한 관심, 지역문제, 환경문제등 모든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계, 타시민운동과의 이해를 전제로한 연대와 협력으로 가능하다. 단 우리들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리매김이 된 이후이어야 한다.

5. 제주지역장애인복지는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

제주지역장애인복지는 96년 개발된 장애인복지시책을 우선 할 것으로 본다.

이는 현 도백이 94년 관선지사일 당시뿐만 아니라 민선지사 당선 후에도 우선 공약사업의 정책순위에 배치시키는 등 상당한 의욕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예산상의 부족과 실무진의 완전한 이해가 모자란 상태에서 추진력

을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이다.

또한 행정이 그러했듯이 생색내기 몇 가지의 건성만 들이고 유야무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야무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장애인복지기금조례가 (준)강제적 기금마련의 토대를 갖고 있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성공적 완수결과에 따라 2001년까지 47억이상의 기금이 모일 전망이므로 이 기금의 집행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제주형장애인복지시책은 수용시설중심에서 재가장애인과 이용시설중심으로, 정책제안을 활발히 펼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지원과 자치단체일부사업의 장애인단체이전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는 시책에 근거하여 2000년대의 정책비전을 제시할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기본적 문제인 수용중심의 예산과 프로그램은 이용시설과 재가장애인중심으로 제주에서도 이전 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지원단체중심의 역할 역시 당사자인 장애인단체중심으로 변화될 것으로 본다.

제주지역은 장애인지원단체가 전무하고 이용시설인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업무협조를 해주는 정도임으로 서울과 같이 서로간의 신경전은 애초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제주형장애인복지시책개발에 부쳐 다음의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 놓지 않는 사회통합형의 실천적 장애인복지.

둘째, 장애인을 위한다는 덕망인사인 일반인이 주류를 형성하는 비주체형복지에서 장애인주체형 장애인복지.

셋째, 1차. 3차산업중심의 제주경제에 알맞는 지역경제형 장애인복지.

어느 정도의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가의 문제이지, 주류의 흐름은 우리의 제안으로 흐를 것이라는 낙관을 믿는다.

•트론발제 3•

조례의 제정과정과 장애인의 역할

박시하(서울시의원)

조례의 제정과정과 장애인의 역할

박시하(서울시 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의원)

1. 조례의 제정과정

1)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

(1)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 조례제정의 범위(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

(1)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한 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

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모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자.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유지·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관리

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타.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신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국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화재예방 및 소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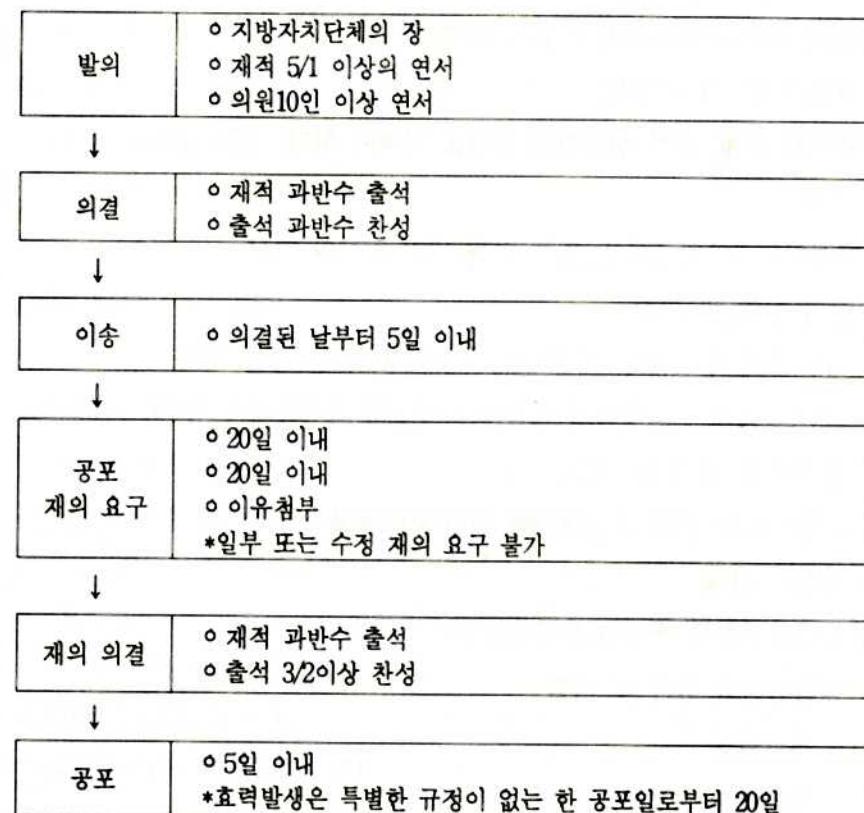
(2) 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사무

- 日費와 施肥의 지급 기준(법 제32조 제2항)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절차(법 제36조 제3항)
-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법 제37조)
-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법 제50조 및 제54조)
- 의회 사무국(광역의회) 및 간사(기초의회)의 설치(법 제82조)
-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법 제83조)
- 사업소 및 출장소 설치(법 제105조, 제106조)
-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법 제130조 제1,2항)
- 재산 및 기금의 설치(법 제133조)
- 재산 관리처분(법 제134조)

3) 조례제정의 일반적 절차

(1) 조례의 제정절차

(1) 조례의 제정절차



내무부장관
시·도지사

보고 ↑

長

- ② 조례안의 제출 →
 ③ 의결서의 이송 ←
 ④ 재의 →

의회

↑ ①조례안의 제출

⑤조례공포

의원

(2) 서울시의 조례제정 과정

1. 의안의 발의(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1) 지방자치단체장(시장)

◦ 반드시 조례, 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의원

◦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

2. 의안의 심의 및 의결

1) 의안의 형식 : 제목, 제안이유, 주요내용, 본문 등을 기재

2) 의안의 제출 : 의장에게 제출(의회사무처 의사과에서 접수)

-지방자치법 제 58조 제2항-

3) 의안번호의 부여-의안대장에 연번부여 목록작성

4) 의장의 결재

5) 상임위원회에 배정(의장직원으로)

6) 상임위원회 심사 및 의결

(1) 제안설명

(2) 전문위원 검토보고

(3) 질의

(4) 결정(가결, 부결, 보류)

7) 본회의 상정 및 표결

(1) 심사보고서 제출

(2) 토론

(3) 결정(표결) ◦ 의결정족수 : 과반수 의결원칙(지방자치법 제56조)

3. 의안(조례)의 효력발생

(1) 단체장에 이송-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2) 공포-20일 이내(20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조례는 확정, 확정 후에도 단체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5일 이내 의장이 공포)

(3) 재의 요구-이유서를 첨부하여 20일 이내

(4) 재의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

(5) 공포-단체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

◦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지방자치법 제19조 제7항)

2. 조례제정의 장애인 참여방안

1) 장애인복지위원회

(1) 장애인복지법상의 규정

제6조(장애인복지위원회)①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장애인복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장애인복지법시행령상의 규정

제3조(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장·단기 계획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 이해증진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른 당해 시·도의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부의 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

원으로,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중 3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②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2. 장애인복지 관련분야 종사자

3. 장애인복지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5조(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한다.

②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각 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당해 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현실 :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대신 서울시 사회복지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안전별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임.

(4) 개선방향 : 서울시에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건의, 계획수립하고 이 위원회에 장애인을 참여시켜 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2) 청원

(1) 헌법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 · 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 · 운용

6.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7.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65조 (청원서의 제출) ①지방의회에 청원을 하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제66조 (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접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67조 (청원의 심사 · 처리)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례>

청원요지서

접수번호	15	접수년월일	1996. 3. 7
청원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60번지 신도림 현대 A)101-702	
	성명	민노한 외 294명	주민등록번호
소개의원	황호순 의원		
건명	상이군경 및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요청에 관한 청원		
소관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청원 위치 및 경위

○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25번지 (973.7m²)

청원경위

- 강북지역에는 노원구 상계6동 771번지에 '87년 11월13일 상이군경 복지회관을 착공, '88년 12월9일 준공하여 서울시와 5년 기한의 의탁운영 계약을 운영되고 있으나,

- 강남지역인 영등포·강서·양천·구로·관악등지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또는 장애자의 재활치료와 복지를 위한 시설이 없어

- 이 지역의 중심지인 구로구 구로5동 25번지(서울시 채비지 973.7m²)에 상이군경복지회관을 건립하여

- 국가를 위하여 싸우다 부상당한 중상이자 및 장애자의 재활치료와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원임.

3) 진정

식예)

진정서 처리상황

보건사회위원회에 1996.4.4 일자 접수된 민원을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 보고 드립니다.

접수일자	1996. 4. 10	진정번호	48
진정인	주소	강북구 미아동 1261-318	
	성명	오종립	
건명	장애인등급 1-2급의 공공시설 임대시설물 신청자격 부여 요청		
진정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등급이 1-2등급으로서 미과세 대상자의 경우 현행 조례상 우선 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치 요망, ○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1순위 : 장애인등급 1-2등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2순위 : 장애인등급 3-4등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미과세 대상자 		
처리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등급이 1-2등급으로 미과세 대상자의 경우 2순위에 해당될 것이나 조례상 규정이 명확치 않아 차기 등 조례 개정시 반영 예정 ○ 도시철도공사에 이 사항을 통보하여 우선 2순위로 인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특기사항			

4) 건의

5) 공청회 참가

서울시 장애인복지계획

● 단기계획-1996년도 계획

1. 저소득장애인 보호 지원

구분	'96 사업계획	실적('96. 5월말)
□ 생계비 등 지원	예산 : 1,222백만원	593백만원(49%)
○ 생계보조수당 지급	생활보호대상자중 장1,2등급 증증장애인 월4만원 지급 (예산 720백만원)	1,713명 411백만원
○ 자녀학비 지원	생보자 중·고교생 자녀 (예산: 245백만원)	437명 122백만원
○ 의료비지원	자활보호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 (예산 : 107백만원)	1,178명 22백만원
○ 보장구 교부	저소득 지체장애인 무료교부 (예산 : 150백만원)	374명 38백만원
□ 자립·자활 지원	예산 : 3,073백만원	1,933백만원(63%)
○ 자립자금대여	가구당 1천만원 이내, 연리 6% (예산 : 1,240백만원)	90가구 (900만원)
○ 전세자금지원	가구당 2천만원 범위, (예산: 1,440백만원)	32명 선정 640백만원
○ 보호작업장 설치	1개소 증설(24→25개소) (예산 : 393백만원)	강서장애인복지관 (5.17착공) 사업비지원 376명
○ 후원결연 사업	사회복지시설협회 주관 연간 400명 목표	
□ 재가복지 확대	예산 : 735백만원	287백만원(39%)
○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체장애인 4명, 보조원 1명 세대구성 5개소(12→17개소)증설, 운영비 지원 (예산 : 399백만원)	122백만원
○ 단기보호사업실시	*증설5개소 : 장애인부모회 2, 밀알복지재단 2, 충현복지원 주간 또는 6일이내 시설보호, 4개소	4개소
○ 시각장애인심부름센타운영	(예산 : 160백만원) 맹인복지연합회 운영 1개소 (예산 : 176백만원)	80백만원 1개소 85백만원

2.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구분	'96 사업계획	실적('96.5월말)
□ 시설확충·보강 ○ 신·개축(5개소)	예산 : 10,958백만원 에덴하우스, 강북·강서종합복지관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서부재활병원 (예산 : 5,372백만원) *착공2개소 : 강서장애인종합복지관 ('96.1.17)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96.4.29) *미착공3개소 : 건축설계중-강북장애인종 합복지관, 설계완료-서부재활병원, 건축 허가 신청-에덴하우스	5,841백만원(53%) 2개소착공 2,213백만원
○ 증축(3개소)	문혜장애인요양원, 인강원 신아재활원(예산 : 2,655백만원) *착공2개소 : 신아재활원('96.3.20) 인강원('96.5.20)	2개소 착공 1,247백만원 *문혜장애인요양원 -건축설계중
○ 시설기능보강	37개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예산 : 2,931백만원)	27개시설 2,381백만원
□ 시설운영 ○ 시설현황 ○ 운영비 지원	예산 : 20,492백만원 수용시설27개소(지체4, 시각3, 청각1, 정 신지체8, 요양시설9, 근로시설2) 이용시설21개소(종합복지관6, 단종복지관 9, 재활병원2, 체육·직업훈련시설4) 48개소 시설 운영 (예산 : 20,494백만원)	10,861백만원(53%) 48개소 10,861백만원

3. 사회참여기회 확대

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 설치대상 : 도로, 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공동주택 등
- 기본방향 : -기존 시설 2000년까지 연차 정비
-신규시설 설계시부터 반영토록 지도

□ 추진실적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계획 시달('96.2.14)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연차적 계획 수립중
- 향후 추진계획
- 정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 제정 추진

나.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

- 기능경기대회, 체육대회등 장애인행사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활동 강화 및 장애인
위문 지원 등

□ 추진실적

- 전국농아인 축구대회(4.24~4.27)
-효창운동장, 15개 시·도 470명 참석, 예산 100백만원 및 의료·청소지원
- 전국장애인체육대회(5.14~5.16)
-예산 63백만원 및 의료·청소지원
- 서울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5.10~5.12)
-19개종목 선수 103명(워드프로세서, 양장, 목공예등)
- 키비탄 특수어린이 대잔치(5.13)
-어린이 대공원, 총45개교 장애아동 2,000명 참석, 후원금 5백만원 지원
- 장애아동 수용복지시설 위문(5.2~5.3)
-15개소 2,094명, 1인당 1만원 기준 위문금 시설에 전달

● 중기계획(1996-2000)

가. 장기목표

- 1) 장애인이 사회 발전수준에 부합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수준을 향상시킨다.
- 2) 자활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하여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참여를 통하여 함께 사는 사회분기를 조성한다.
- 3)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날로 늘어나는 장애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정비한다.

나. 시책의 체계

- 장애인복지수준 향상
 - 저소득 장애인 자립지원 확대
 - 장애인 자활능력 배양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확대
 -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 장애예방 활동 강화
-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다. 시책의 개요

1)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 가)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을 '98년까지 6만원으로, 전세자금 지원대상을 200가구로 확대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98년까지 인문계 고등학생으로 확대하며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대여 또는 임대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한다.

- 나) 장애인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1) 재가장애인의 취업·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립자금 대여 대상가구를 확대하고 보호작업장을 '98년까지 27개소로 확충하며

(2) 장애인 결연·후원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공시설내 자판기 등 운영권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한다.

다) 장애인이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기존시설은 2000년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신규시설은 설계단계에서 반영이 되도록 행정지도한다.

2)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확대

가) 중증장애인들의 건강한 성장과 재활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96년까지 20개소로 확충하고 가족의 보호가 일시적으로 곤란한 장애인을 위한 단기보호시설을 '98년까지 5개소 신설하며 장애인 가족이 사회활동에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탁아사업 시범운영 등 각종 복지시책을 확대 추진한다.

나)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과 취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고 각종 장애인단체의 행사를 적극 후원한다.

다) 시민의 의식개선을 위하여 시민이 접하기 쉬운 영상·인쇄매체를 통한 입체적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라) 후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명 예방사업, 유아기 무료 예방접종사업 등을 강화하여 추진한다.

3)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가) 장애인이용시설을 중심으로 '98년까지 장애인 복지시설을 12개소(이용시설9, 수용시설3) 확충하고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현대화 및 운영비 확대 지원을 실시한다.

라. 3개년 추진계획

1) 장애인복지수준향상

사업명	사업내용	년차별 추진계획			
		계	'96	'97	'98
저소득장애인자립지원 확대	○ 생계보조수당인상지급 -대상 : 생활보호대상 중증장애인 -3만원('95)→6만원('98)	4,500명	1,500 (4만원)	1,500 (5만원)	1,500 (6만원)
	○ 장애인전세자금 지원대상 확대 -지원금액 : 가구당 2천만원	372가구	72	100	200
	○ 장애인자녀 학비지원확대 -지원내용: 수업료 및 입학금 -중학교 · 실업고교→인문계고교까지 확대	1,360	410	450	500
	○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 자활보호대상장애인 -본인부담진료비 지원	14,444명	4,364	4,800	5,280
	○ 장애인보장구 지원 -저소득장애인중 취업활동 가능자우선지원 -의수족, 보청기, 흰지팡이, 휠체어 -안정적 재원확보위해 기금화검토추진	2,475명	750	825	900
	사업비	119.15	26.62	34.85	57.68
장애인의 자활능력 배양	○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대상: 저소득장애인가구주 -가구당 8백만원 (연리6%, 5년거치 5년분할상환)	397가구	120	132	145
	○ 장애인보호작업장 확충, 정비 -24개소(95)→28개소(98)	4개소	1	1	2
	○ 운영비 지원				
	○ 장애인후원·결연사업 지원 -대상: 요보호 저소득 장애인 -사회복지시설협회 주관으로 연400명 이상 결연 추진	1,200명	400	400	400
	○ 공공시설내 신문판매대 등의 우선 임대 지원				
	사업비	54.25	14.99	16.59	22.67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정비	○ 장애인의 사회적응력 재고 및 사회활동 불편요인 완화 -설치대상 : 도로, 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공동주택 등 -기존시설 2000년까지 연차정비 -신규시설 설계시부터 반영도록 행정지도				
	총사업비(억원)	173.4	41.61	51.44	80.35

2)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명	사업내용	년차별 추진계획			
		계	'86	'97	'98
재가복지 서비스 확대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확충 -정신지체장애인 4명, 보조원 1명이 1세대를 구성, 공동재활 -12개소(95)→20개소(98)	8개소	4	2	2
	-시설별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 중증장애인단기보호사업 확대 -주간 또는 6일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호실 시(시설당 15~20명 보호) -1개소(95)→6개소(98)	5개소	1	2	2
	-시설별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 장애아동 타이사업 시범운영 -운영 : 충현복지원, 은평아동복지천사원(2개소) -운영비 지원	2개소			
	○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운영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설치하고 운영비 지원	6개소			
	○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맹인복지연합회에 두고 운영비 지원	1개소			
	사업비	37.82	10.5	12.56	14.76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지원	3회			
	○ 장애인체육대회지원	3회	1	1	1
	○ 각종 장애인단체행사 지원	16개단체	1	1	1
	사업비	4.95	1.5	1.69	1.76
장애인에 대한 시민 의식 개선	○ 장애인종합복지관 홍보물 제작지원-비디오테이프 제작	2회		1	1
	사업비	3		1.5	1.5
장애인 예방활동 강화	○ 설명예방사업 전개 -국제라이온스클럽과 연계하여 의료서비스 제공(매년 200명씩)				
	○ 유아기 무료 예방접종사업 강화 -부모에 대한 계몽활동 병행실시	600명	200	200	200
	○ 선천성 기형아 출산예방 홍보 -추진기관 : 복지시설, 보건소				
	○ 가임여성에 대한 장애예방계몽				
	총사업비(억원)	45.77	12	15.75	18.02

3)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사업명	사업내용	년차별 추진계획			
		계	'96	'97	'98
장애인복 지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98년까지 수용시설3개소, 이용시설9개소 신 축	12개소	5	4	3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지원 -98년까지 증축 14개소, 시설 개·보수 23개 소 실시	37개소	16	11	10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장애인수용시설 -장애인이용시설		28개소 22개소	29 26	30 28
	○ 장비 현대화 및 보강사업 지원 -차량교체, 시청각시설 등 23종	14개소			
총사업비		960.84	294.32	329.46	337.06

●부록

-장애인관련 조례(전국)

-제주형장애인복지시책

•부록 1•

조례의 현황과 내용

■ 재원확보

●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 조례 (1995.10.20 조례 제1386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접수입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지역경제국장, 보건사회국장, 안양시의회의원 2인, 장애인대표 3인으로 구성한다.

④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각1인을 호선한다.

⑤위원회에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계장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의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계좌 설치)에 납입관리하되, 적립원금과 수익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④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⑤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에 여유기금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사업
2. 기타 기금 증식사업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과 결산을 위하여 년간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위원회에서는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다음 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확정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기금지급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활동사업

2. 장애인 복지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지역사회 활동참여 및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보건사회국장

2. 분임운용관 : 사회과장

3. 지출원 : 사회계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양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관리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①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2월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결산서를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95.10.20 조례 제13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산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995.4.28. 조례12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장애인복지의 기반조성과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산시 장애인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기금설치) 경산시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경산시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장애인단체 출연금

3. 주민 및 기관단체 등이 기탁한 성금

4. 기금운용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수입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과 주민 및 기관단체 등이 기탁한 성금

3. 기타 수입금 등

③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기금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한다.

② 적립기금은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공채 또는 유가 증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

③ 운용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 운용계획

2. 결산 보고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경산시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보건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국장, 산업경제국장, 보건소장, 기획담당관, 장애인협회 경산시지부장, 장애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장애인 여가시설, 재활시설, 요양원 시설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내용

2. 장애인 경산시지회 및 각 읍·면·동 분회 지도 육성

3. 장애인공동작업장 및 장애인 능력운행 운영

4.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장애인교육 및 직업훈련

6. 장애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경산시 장애인신문·잡지 발간

8.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회계관직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기금 운용관 : 보사환경국장

2. 분임 운용관 : 사회과장

3. 지 출 원 : 사회계장

② 기금 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기금 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경산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 제규정을 준용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주도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99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 장애인 복지의 자립기반조성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도주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도 일반회계 출연금

2.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8조제1항제7호의 규정의 지방체로 조성되는 자금의 10퍼센트 범위

3.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사회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체 지원한다.

1. 장애인재활시설, 요양시설관리운영에 수반되는 사항

2. 장애인단체(한국정신지체애호인협회제주도지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제주지부, 한국농아복지회제주지부, 제주지체장애인복지회) 및 장애인자활작업장 육성

3.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4. 장애인교육 및 직업훈련

5. 장애인건강 및 취미활동지원

6.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예치하거나, 국채, 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 관리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관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의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②기금의 조성 적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기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계관리)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국장을 기금출납원은 장애

인복지계장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상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생업지원

●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 조례

(1995.4.25 조례 제 3181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및 노인복지법 제1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장애 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유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1.15)

제2조(적용의 범위)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m²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투자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등의 설치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2. 주민등록 등본
3. 장애인수첩, 생활보호대상자, 순국선열유족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우선계약)시장 또는 시투자기관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개정 96.1.15)

제6조(사업의 의무)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받은 자는 신문판매대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용료등)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재산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

별표(신설 95.1.15)

순위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유족
1	장애인등급 1-2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거액보호대상자	생활등급 1-4급	생활보호대상자
2	장애인등급 3-4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등급 5-7급	미과세대상자
3	장애인 등급5-6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생활등급 8급이하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1995. 6. 5 조례 제3218조]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이하 "식료품등"이라 한다)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①장애인에게 식료품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및 위탁계약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청사를 신축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부산광역시 및 사업소 청사
2. 부산광역시 및 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부산광역시가 전액출자한 지방공사의 공공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공시설안의 식료품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전공고) 부산광역시장, 사업소장 또는 지방공사 사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2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식료품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 수첩
4.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함)

제5조 (우선계약) ①설치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50% 범위안에서 일반인 보다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고,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자 중에서 설치자가 결정한다.

1.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장애인
2. 장애정도 및 등급이 높은 자

제6조 (계약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하며, 부득이 계약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재산관리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기에관한조례 (1995. 1. 12 조례 제6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자동 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장애인에게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전공고) 시장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이를 반회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은 20세 이상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 수첩 사본

제5조(우선 허가)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을 받을 때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허가해 되,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정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
(1995.4.28 조례12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을 위탁관리할 시에는 장애인(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장애인의 자활도모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공공시설물을 위탁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 시설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전공고) 시장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공공시설물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보, 반화보 등에 게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은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서,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수첩, 회원증 사본

제5조(우선허가 위탁관리)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시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중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허가 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허가 및 위탁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취급 품목, 판매 가격, 전물 및 기계관리, 주변청소 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고 건물·기계 등 기타 시소유물건을 파손시켰을 시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기타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자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